

의안번호	2200929
의 퇴 인	김희정의원
회 답 일	2024. 8.20.
추 계 번호	24D1198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, 공공요금 추가재정소요액은 2026년 592억원, 2030년 41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,502억원(연평균 500억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-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공공요금의 지원 (안 제10조의2)	592	543	497	455	415	2,502	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(공공요금의 지원)	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요금,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요금,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요금(이하 “공공요금”이라 한다)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을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의2(공공요금의 지원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공공요금의 지원 방법·절차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 현 시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, 본 추계에서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 - 6·25전쟁참전유공자나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이면서 전상군경·공상군경·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이미 공공요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
- 공공요금 지원액은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평균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각각 공공요금 감면액 단가기준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가정. 단, 수도요금의 경우 통일된 법령이나 지침이 없으며,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각기 규정하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공공요금 지원(안 제10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, 수도요금을 각각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(현황) 현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은 개별 법률이나 지침, 약관 등을 통해 ①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과 ② 신체적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, ③ 5·18민주유공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며, 월마다 정액이나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감면받고 있음¹⁾
 - 참고로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규정에 따른 2023년도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감면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전기요금(한국전력공사) 16,684명(26억 5,691만원)
 - 도시가스요금(도시가스공사) 16,684명(28억 7,795만원)

[표 2]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근거 법령등, 지원단가 현황

	지원내용	지원대상	지원단가	관련법령등
전기 요금	전기요금 감면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~3급 상이자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~3급 상이자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	주택용 전력 및 일반용 전력에 대해, 월 16,000원 한도(여름철은 월 20,000원 한도)	한국전력공사 「기본공급약관」 제67조(요금의 계산) 제6항 제2호 제나목~제라목
도시 가스 요금	도시가스 요금 감면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1~3급 상이자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서	- 취사난방용에 대해, 동절기(12~3월) 72,000원, 동절기제외(4월~	산업통상자원부 「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

1)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, 통신요금은 과학기술부 및 각 통신사, 도시가스는 산업자원부 및 각 도시가스사가 소관부서(사업자)임

	지원내용	지원대상	지원단가	관련법령등
		정한 1~3급 상이자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	11월) 월 9,900원 한도로 할인. - 취사용에 대해, 월 1,680원 한도로 할인	경감지침 제2조 (적용대상) 및 별표 1, 2
전화 요금	전화요금 감면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.18자유상이자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중 5.18민주화운동부상자	월정액 35% 할인	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 제3항 제6호~제7호
수도 요금	수도요금	수도요금은 「수도법」 제38조(공급규정) 할인대상에 국가유공자가 미포함되어 감면의 법적 근거는 없고,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음		

자료: 국가보훈부

□ (대상자) 공공요금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는 2023년 12월말 기준 123,364명에 대하여 통계청 남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
○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지원은 없음

[표 3] 공공요금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	2026	2027	2028	2029	2030
공공요금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	103,713	95,044	87,038	79,604	72,6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지원단가) 공공요금 지급액은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평균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각각 공공요금 감면액 단가기준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가정

- (공공요금별 월지급액) 2024년 기준 공공요금 감면액 단가 상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평균지급액 추정
 - 전기(가정용): 월평균 17,000원²⁾으로 가정(16,000원, 6월~8월 20,000원)
 - 도시가스(취사난방용): 월평균 30,600원³⁾으로 가정(12~3월: 72,000원, 4월~11월 9,900원)

□ (추가재정소요) 공공요금별 월지급액이 2024년 기준금액으로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하고,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개정안에 따라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향후 5년간 2,502억원으로 추정

-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각기 규정하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외되었고,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참전유공자(A, 명)	103,713	95,044	87,038	79,604	72,677	
전기요금(B, 원)	17,000	17,000	17,000	17,000	17,000	
도시가스요금 (C, 원)	30,600	30,600	30,600	30,600	30,600	
소요비용(A×(B+C)×12, 백만원)	59,241	54,289	49,716	45,470	41,513	250,229

주: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2) 17,000원=(9개월×16,000원 + 3개월×20,000원)÷12

3) 30,600원=(4개월×72,000원 + 8개월×9,900원)÷12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